

시각장애인 및 독서장애인에 의한 출판 저작물 접근권 향상을 위한 조약 체결을 위한 외교회의

2013년 6월 17일-28일, 마라케쉬

시각장애인/독서장애인을 위한 제한과 예외에 대한 국제 기구/조약의 초안문서

사무국에 의해 마련됨*

* 2012년 12월 18일 개최된 WIPO 총회, 22차 특별 세션의 결정에 따라, 외교회의의 준비 위원회는 외교회의의 개최 전에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의 추가적인 후속 합의를 이 기본 제안에 포함할 것이다. 이 문서의 개정판은 추후에 공개될 것이다.

서문

(첫째)

세계인권선언과 장애인 권리에 대한 UN 협정에서 선언되었던, 비차별, 기회의 균등, 접근성, 그리고 사회에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통합이라는 원칙을 상기하며,

(둘째)

자신이 선택한 모든 형태의 통신을 통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기반 위에서 모든 종류의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받고,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의 향유, 그리고 연구를 수행할 권리를 제한하는, 시각장애인/독서장애인의 완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위협을 염두에 두며,

(셋째)

문학적, 예술적 창작의 동기 부여와 보상으로서의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과, 공동체의 문화적 삶에 참여하고, 예술을 향유하며, 과학적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독서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기회를 향상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넷째)

사회에서 동등한 기회를 얻기 위한 시각장애인/독서장애인의 출판 저작물에 대한 접근 장벽, 그리고 접근가능한 포맷의 저작물 수를 확대하고 그러한 저작물의 유통을 개선할 필요를 인식하며,

(다섯째)

시각장애인/독서장애인의 대다수가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에 살고 있음을 고려하며,

(여섯째)

각 국가의 저작권법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독서장애인의 삶에 대한 새로

은 정보통신기술의 긍정적 영향력이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향상된 법적 체계에 의해 강화될 수 있음을 인식하며,

(일곱째)

많은 회원국들이 자국 저작권법에 장애인을 위한 예외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접근가능한 포맷의 저작물의 여전히 부족하고, 이들이 접근가능한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자원이 요구되며, 접근가능한 포맷의 저작물을 국경을 넘어 교환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저작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중복적으로 필요하게 됨을 인식하며,

(여덟째)

[특히] 시장이 그러한 접근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를 포함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시각장애인/독서장애인이 접근가능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저작권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만드는데 있어서의 저작권자들의 중요성]과 시각장애인/독서장애인이 접근가능한 저작물을 만들기 위한 적절한 예외와 제한의 [중요성][필요] 모두를 인식하며,

(아홉째)

저자의 권리의 효과적인 보호와 더 큰 공공 이익, 특히 교육, 연구, 정보 접근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 그리고 그러한 균형이 시각장애인/독서장애인의 이익을 위해 효과적이고 적절한 시점에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켜야 함을 또한 인식하며,

(열번째)

[저작권 보호에 대한 기존 국제 조약 하의 회원국의 의무 및 베른 협정 9(2)항과 다른 국제 기구에 기반한 제한과 예외의 3단계 테스트의 중요성과 유연성을 재확인하며]

(열한번째)

개발에 대한 고려가 이 기구 업무의 핵심적인 부분임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2007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설립회의 총회에서 채택된, 개발 의제 권고의 중요성을 상기하며,

(열두번째)

국제 저작권 시스템의 중요성과 시각장애인/독서장애인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한과 예외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갈망을 인식하며,

A 조 정의

이 조항들을 위해

“저작물”

은 베른협정 2.1항의 의미 내에서의, 텍스트, 기호, 그리고/혹은 삽화 형태의, 출판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어떠한 미디어를 통해 접근가능하도록 공개된,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을 의

미한다.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본”

은 수혜자가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안적인 방식 혹은 형태로 만들어진 저작물의 복제본을 의미한다. 시각장애/독서장애가 없는 사람들처럼 실행가능하고 편안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접근가능한 포맷 복제본은 수혜자에게만 배타적으로 이용되며, 원 저작물의 완전성을 존중하되, 저작물을 대안적인 포맷으로 접근가능하도록 만드는데 필요한 변경이나 수혜자의 접근성 요구를 적절하게 고려한다.

* 1. 오디오북이 “저작물” 정의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석상의 이해/합의된 성명이 초안될 것이다.

“선진국에서의 합리적인 가격”(SCCR/23/7 에서 제안된)

은 저작물의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본을 해당 시장에서 독서 장애가 없는 사람이 지불하는 가격과 비슷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개발도상국에서의 합리적인 가격”(SCCR/23/7에서 제안된)

은 시각장애인과 독서장애인의 필요나 수입 격차를 고려하여, 해당 시장에서 지불가능한 가격으로 저작물의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본을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안 A

두 정의 모두 삭제

대안 B

두 정의 모두 유지

대안 B.1

“개발도상국에서의 합리적인 가격”은 저작물의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본을 해당 국가의 경제 현실을 반영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격을 의미한다.

대안 B.2

“개발도상국에서의 합리적인 가격”은 저작물의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본을, 시각장애인/독서장애인의 필요와 수입 격차를 고려하여, 해당 국가의 경제 현실을 반영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격을 의미한다.

[“저작권”에 대한 언급은 자국법에 따라 회원국/체약당사국에 의해 인식된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제반 권리를 포함한다.]

“승인된 기관”

승인된 기관은 비영리적으로 수혜자에게 교육, 훈련, 적응적 독서 혹은 정보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허가되거나 인정된 기관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 기관 혹은 비영리 단체로서 자신의 주요1 활동 혹은 기관의 의무의 하나로 수혜자에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승인된 기관을 아래와 같은 관행을 수립하고 따라야 한다.

- i)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상은 수혜자여야 한다.;
- ii)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본의 배포와 이용을 수혜자 그리고/혹은 승인된 기관으로 제한한다. ;
- iii) 허가되지 않은 복제본의 복제, 배포 및 이용을 막는다. ;
- iv) H조에 따라 수혜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도, 저작물 복제본에 대한 적절한 관리, 기록, 처리를 유지한다.

* 1. “주요”의 범위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이해/합의된 성명문이 초안될 것이다.

B조

수혜자

수혜자는 아래와 같은 사람이다.

(a) 맹인

(b) 시각장애 혹은 인지 혹은 독서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러한 장애(impairment or disability)가 없는 사람과 상당히 동등한 정도로 시각적 능력이 향상될 수 없고, 그래서 그러한 장애가 없는 사람과 상당히 같은 정도로 인쇄된 저작물을 읽을 수 없는 사람 1

(c) 신체적 장애 때문에 책을 잡거나 조작할 수 없거나, 정상적으로 독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눈의 초점을 맞추거나 움직일 수 없는 사람.

* 1 [해석상의 이해: 이 문장의 어떤 것도 “향상될 수 없는”이 모든 종류의 의학적 진단 절차나 치료의 이용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Bbis 조

의무의 성격과 범위

[1. 회원국/체약당사국은 이 국제 법적 기구/공동 권고/조약의 조항을 구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2. 회원국/체약당사국은 회원국/체약당사국의 서로 다른 발전 수준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우선사항과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 투명하게 이 국제 법적 기구/공동 권고/조약을 적용해야 한다.

3. 회원국/체약당사국은 이 국제 법적 기구/공동 권고/조약의 구현이, 공정하고 공평한 신속

절차를 포함하여, 적절한 시점에 효과적인 행동을 허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SCCR 회의 전에 브라질, EU, 인도, 나이지리아, 미국에 의해 제안된 문구]

C조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본에 관한 국내법상 제한과 예외

1. (A) 회원국/체약당사국은 여기서 규정된 수혜자를 위해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본으로 저작물의 이용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WIPO 저작권 조약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복제권, 배포권, 공중전달권에 대한 예외와 제한을 자국 저작권법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B) 회원국/체약당사국은 여기서 규정된 수혜자를 위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공연권 [및 번역권]에 대한 예외를 또한 제공할 수 있다.

2. 회원국/체약당사국은 아래와 같이 자국 저작권법 상 예외 혹은 제한을 둠으로써, 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권리에 대해 C(1)조를 실현할 수 있다.

(A) 승인된 기관은 저작권 권리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의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물을 제작하고, 다른 승인된 기관으로부터 접근가능한 포맷의 저작물을 입수하고, 그 복제본을 (비영리적 대여, 혹은 유무선 수단을 이용한 전자적 통신을 포함하여) 모든 수단을 통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떠한 중간 단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언급된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승인된 기관은 해당 저작물 혹은 그 복제본에 합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2. 저작물은 접근가능한 복제물로 변환된다. 이는 접근가능한 포맷에서 정보를 탐색하는데 필요한 어떤 수단을 포함할 수 있으나, 수혜자가 저작물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3. 접근가능한 포맷의 저작물 복제본은 수혜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되어야 한다.
4. 이러한 활동은 비영리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B) 수혜자가 해당 저작물 혹은 그 복제본에 합법적으로 접근했을 경우, 수혜자, 혹은 주요 보호자나 간병인 등 그들을 대신하는 사람은 수혜자의 개인적 이용을 위해 저작물의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본을 만들 수 있고, 혹은 수혜자가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본을 만들거나 이용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3. 회원국/체약당사국은 [상호참조 조항들]에 따라 자국 저작권법에 다른 제한 및 예외를 둠으로써 C(1)조를 실현할 수 있다.

4. [회원국/체약당사국은 이 조항 하의 제한과 예외를 해당 시장에서 수혜자를 위한 합리적인 조건 하에 상업적으로 구매할 수 없는, 특정한 접근가능한 포맷의, 출판된 저작물로 한정할 수 있다.]

5. 이 조항에서 언급된 예외와 제한이 보상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자국 법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D조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본의 국경을 넘어선 교환

1. 회원국/체약당사국은 만일 접근가능한 포맷의 저작물 복제본이 예외와 제한 하에서 혹은 법의 운용에 따라 만들어졌을 경우, 그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본은 승인된 기관에 의해 다른 회원국/체약당사국의 수혜자 혹은 승인된 기관에 배포되거나 이용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2. 회원국/체약당사국은 아래와 같이 자국 저작권법에 예외와 제한을 둬으로써 D(1)조를 실현할 수 있다.

(A) 승인된 기관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다른 회원국/체약당사국 내의 (승인된 기관인) 기관이나 단체에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본을 수혜자의 배타적인 이용을 위해 배포하거나 이용가능하게 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B) 승인된 기관이 A조에 따라, 권리자의 허락없이 다른 회원국/체약당사국 내의 수혜자에게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본을 배포하거나 이용가능하게 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3. 대안 A : [회원국/체약당사국은 앞서 언급한 배포 및 이용제공을, 수입 국가에서 합리적인 시간과 합리적인 가격 내에서 다른 방식으로는 구할 수 없는 출판된 저작물로 제한할 수 있다.]

대안 B : [회원국/체약당사국은 수출국가의 승인된 기관이, 배포 및 이용제공 이전에, 특정한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본이, [해당 저작물을 생산하고 배포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수입국 내의 수혜자의 필요나 수입을 고려한 가격에 [합리적인 조건 하에] , 수혜자에게 익숙한 배포망을 통해서 취득될 수 있었음을 알았거나 혹은 알았어야 할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출판된 저작물의 배포 및 이용제공을 금지해야 한다/할 수 있다.]

4. 대안 A : 회원국/체약당사국은 자국 저작권법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권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경우로 제한되는 또 다른 예외 및 제한을 둬으로써 D(1)조를 실현할 수 있다.

대안 B : 회원국/체약당사국은 Ebis조에 따라 자국 저작권법에 다른 제한과 예외를 둬으로써 D(1)조를 실현할 수 있다.

E조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물의 수입

회원국/체약당사국의 법률이 수혜자, 이들을 대행하는 사람, 혹은 승인된 기관이 접근가능한 포맷의 저작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 그 회원국/체약당사국의 법률은, 권리자의 허락없이,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 [그들이/승인된 기관이]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물을 수입하는 것 또한 허용해야 한다.

Ebis 조

대안 A

[이 기구에 규정된 모든 예외와 제한[의 국가적 이행]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권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대안 B

[체약당사국/회원국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권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자국의 [법/법률]에 이 조약/기구[의 Bbis 조에 부합하는] [추가적인/어떠한] 제한과 예외를 둘 수 있다.

F조

기술적 조치에 관한 의무

대안 A

1. 회원국/체약당사국은 C조에 의해 제공되는 예외의 수혜자가 기술적 보호조치가 저작물에 적용된 예외적인 상황에서 (저작권) 예외의 향유가 금지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2. 회원국/체약당사국은 자국 저작권법 하에서, C조의 예외로부터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리고 이에 필요한 한도에서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허용함으로써 F(1)조를 실현할 수 있다. 회원국/체약당사국은 수혜자의 제한과 예외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이고, 즉각적으로 접근가능한 자발적 조치를 권리자가 취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대안 B

회원국/체약당사국의 국내 법률이 기술적 조치의 우회에 대항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기술적 조치가 저작물에 적용되어 있고 수혜자가 그 저작물에 대한 합법적으로 접근했으나 수혜자가 회원국/체약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른 제한과 예외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당 저작물에 권리자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기구/조약에 따라, 회원국/체약당사국은 수혜자가 그 회원국/체약당사국의 국내법이 제공하는 제한과 예외를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채택해야만 한다.

G조

계약과의 관계

삭제됨

H조

프라이버시의 존중

이 예외와 제한을 구현함에 있어서, 회원국/계약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수혜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I조

3단계 테스트의 해석

[3단계 테스트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여, 제3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a) 인권과 기본적 자유로부터 나오는 이익
- b) 특히, 2차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오는 이익
- c) 다른 공공 이익, 특히 과학적 발전과 문화적, 교육적, 사회적, 혹은 경제적 발전에서 오는 이익]

J조

국경을 넘어선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협력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본의 국경을 넘어선 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회원국/계약당사국은 승인된 기관이 상호 인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자발적인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제 사무국은 이 기구/조약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본의 국경을 넘어선 교환과 관련된 익명적이고 집계된 데이터를 가능한 한 수집해야 한다.]

[“적용 원칙”에 대한 묶음 패키지

국내 구현 조항

[첫째 문장]

회원국/계약당사국은 이 기구/조약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채택해야 한다.

[둘째 문장]

각 당사국은 자신의 법적 시스템과 관행 내에서 이 기구/조약의 조항들을 구현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

[세번째 문장]

[회원국/체약당사국은 수혜자를 위한 특별한 예외와 제한; [공정 거래(fair dealing) 혹은 공정 이용 (fair use) 혹은 그들의 조합과 같은] 일반적 예외와 제한을 통해, 그것이 예전에 존재하던 것이든 혹은 이 기구/조약의 이행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든, [회원국/체약당사국의 국제적 의무와 일치한다면] 이 기구/조약 하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 기구/조약은 국내 법에 의해 규정되는 장애인을 위한 다른 예외와 제한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개발” 조항

[회원국/체약당사국은 회원국/체약당사국의 경제적 상황, 사회적, 문화적 요구를 고려하여, 그리고 최빈국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특별한 요구를 고려하여, 회원국/체약당사국의 국제적 권리와 의무에 부합하게, 이 기구/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수혜자의 이익을 위한 다른 예외와 제한을 국내법에 구현할 수 있다.]

“저작권 존중” 조항

[이 기구/조약의 적용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는데 있어서, 회원국/체약당사국은 문학및예술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및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다른 조약들 하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자신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권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경우로 예외와 제한을 한정해야 한다는 의무를 포함한다.]

[회원국/체약당사국은 수혜자를 위한 특정한 예외와 제한을 통해; [공정 거래 혹은 공정 이용 혹은 양자의 조합과 같은] 일반적인 예외와 제한을 통해, 그것이 기존에 존재하던 것이든 이 기구/조약의 이행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든, [그러한 예외와 제한이 회원국/체약당사국의 국제적인 권리와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라면] 이 기구/조약 하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존중” 조항

회원국/체약당사국은 시각장애인/독서장애인의 [권리, 자유, 존엄성을 증진, 보호, 보장하기 위한][대우와 보호에 관한] 국제 협정 하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여기 있는 조항들을 자국법에 구현해야 한다,]